

# 안전거리폐지 LPG법 시행규칙개정령(안)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

● 한국LPG가스공업협회 ●

최근 우리회는 산자부가 03.9.8자로 입법예고한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(안)」(산업자원부공고 제2003-179호)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.

## 1. 안 별표3 제1호가목(1)의(가)내지(다)

○ LPG충전시설중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·충전장소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에 대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부여한 “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” 라는 재량규정 삭제

□ 협회 의견

○ 찬반여부 : 반대

○ 반대사유

-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역실정이 모두 제각각인 상황에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,
-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이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은 몇차례에 걸친 충전소 가스폭발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

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음

ex) 98. 9. 11 부천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피해현황

; 75명 중경상 / 재산피해 50여억원

; 피해반경이 190m까지 달할 정도였음

(가스학회 조사결과)

-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기준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별도의 안전거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겨우 6곳에 불과해 기존 사업자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라고 사료됨

#### ○ 검토의견

- 안전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규정 유지

## 2. 안 별표3 제호가목(1)의(라)

○ 액화석유가스중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·충전장에서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 유지규정 삭제

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한 재량 위임범위를 "LPG충전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기준의 2배 범위 이내"로 구체화

#### □ 협회 의견

○ 찬반여부 : 반대

○ 반대사유

- 우리의 경우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

주장하나, 어느 국가를 기준하느냐에 따라 다르며, 외국과 국내와의 가스안전관리 수준이 다르고, 여러차례에 걸친 충전소 폭발 사고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거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므로 외국과 국내의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

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는 나라도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과 안전거리를 80m로 유지하는 등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화된 나라도 있으므로 비교대상 국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

- 특히 LPG는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폭발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실제로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LPG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바 있음

#### ○ 검토의견

1안) 안전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50m 규정 유지

2안)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50m규정을 삭제하되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한 재량 위임범위를 "LPG충전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기준의 2배"로 보다 명확